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훗 카 이 도 경 찰

처 음 에

이 팜플렛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 경찰의 지원제도란 어떤 것인가?
- 경찰이 피해자나 그 가족 분들께 부탁할

사항이 무엇인가?

- 사고 가해자는 어떤 수속으로 처벌되는가?
- 자동차의 보험제도란 어떤 것인가?

등을 통지함으로써 여러분을 도와 드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상담, 문의에 관해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_____ 경찰서 _____ 과 _____ 계

이 름 _____

전 화 _____

입니다.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목 차

- 1 경찰로부터의 지원 등이 있습니까? 1
~ 지원과 연락의 제도 ~

- 2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됩니까? 4
~ 수사시작부터 처분결정까지의 흐름 ~

- 3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11
~ 보상과 보험의 제도 ~

- 4 원조나 구제제도는 있습니까? 15
~ 원조나 구제의 내용 ~

- 5 경찰 이외의 상담창구는 있습니까? 18
~ 관계기관부터의 어드바이스와 카운슬링의 기관 ~



1 경찰로부터의 지원 등은 있습니까?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찰 직원이 동행하여 도와 드리거나, 정보 제공, 상담창구 설치 등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요원 제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고 정신적으로 중요하고 있는 피해자나 그 가족 여러분에게 수사원이 아닌 지정된 경찰 직원이 동행하여 도와 드리는 등, 각종상담 접수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 제도

교통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 여러분은 교통사고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해자는 체포됐는지 가해자의 형사처분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런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한 교통사고사건 등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수사원 등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상대방에 관한 것

- 가해자 주소, 이름, 연령 등
-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 수사 상황

■ 교통사고 상대방의 형사처분에 관한 것

- 가해자의 검거 상황
- 가해자의 처분 상황
- 송치된 검찰청, 기소·불기소 등의 처분 결과, 기소된 법원

■ 기타

피해자나 그 가족 여러분 중에는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연락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담당 수사원에게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형사처분과 달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의 행정처분이 공안위원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취소 처분 과 90일 이상의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공개되는 「의견청취」를 처분을 받을 가해자에게 하게 됩니다. 다만, 「의견청취」에는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도 있으며, 가해자와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의견청취 기일」 등에 관해서는 하기에 문의해 주십시오.

홋카이도경찰본부 운전면허관리센터 (011) 251-0110

홋카이도경찰 하코다테방면본부 운전면허시험장 (0138) 46-2007

홋카이도경찰 아사히카와방면본부 운전면허시험장 (0166) 51-2489

홋카이도경찰 구시로방면본부 운전면허시험장 (0154) 57-5913

홋카이도경찰 기타미방면본부 운전면허시험장 (0157) 36-7700

가장 가까운 경찰서

경찰의 상담창구

경찰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피해자 등의 상담에 대응하는 등의 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창구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① 경찰종합상담전화(각종 경찰상담 접수)

○ 홋카이도 상담센터 (011) 241-9110

(삿포로시중앙구북2조서7 본부청사내)

○ 하코다테 방면본부 상담센터 (0138) 51-9110

(하코다테시교료카쿠조15번5 방면본부청사내)

○ 아사히카와 방면본부 상담센터 (0166) 34-9110

(아사히카와시1조도오리25-487 방면본부청사내)

○ 두시로 방면본부 상담센터 (0154) 23-9110

(구시로시구로가내조10-5 방면본부청사내)

○ 기타미 방면본부 상담센터 (0157) 24-9110

(기타미시아오바조6-1 방면본부청사내)

②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의 상담창구

- 홋카이도 경찰본부 교통수사과 (011) 251-0110 삿포로시중앙구북2조서7 본부청사내 ○
- 하코다테 방면본부 교통과 (0138) 31-0110 하코다테시교료카쿠조16번1 방면본부청사내
- 아사히카와 방면본부 교통과 (0166) 35-0110 아사히카와시1조도오리25-487 방면본부청사내
- 구시로 방면본부 교통과 (0154) 25-0110 구시로서구로가네조10-5 방면본부청사내
- 기타미 방면본부 교통과 (0157) 24-0110 기타미시아오바조6-1 방면본부청사내
- 가장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
- 각도도부현경찰의 상담창구를 알고 싶은 분은
경찰청 범죄 피해자지원실 홈페이지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를 참조하십시오.

③ 경찰이외 기관에 의한 지원이나 연락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경찰이외의 기관이 하고 있는 지원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인제도

피해자 등의 부담이나 불안을 되도록 풀기 위해서 피해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인」이 전국의 검찰청에 배치돼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인은 피해자 등이 하는 여러가지 상담의 대응, 법정으로의 안내·같이 동행, 사건기록의 연람, 증거품의 반환 등의 각종수속을 도와 드리거나 피해자 등의 상황에 따라 정신면, 생활면,경제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을 소개하는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법무성의 각기관이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통지제도

검찰청, 지방 갱생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가 피해자 등에게 그 희망에 따라 사건의 처분결과, 형사재판 결과나 유죄판단 확립 후의 가해자의 처우상황 등에 대해 통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건을 다른 검찰청에 통지합니다.

또, 소년원, 지방 갱생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가 피해자 등에게 그 희망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관한 통지(소년심판후의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해자가 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경우는 가까이에 있는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우는 살고 있는 도도부현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합니다.

2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 됩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수 사

수사란 증거를 모음으로써 범인을 특정해 사실관계를 밝혀서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수사를 합니다.

사 정 청 취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나 교통사고 신고를 한 상황에 대해서 담당경찰관이 자세히 질문합니다. 진술조서를 작성할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 여러분에게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사정청취는 교통사고 원인규명과 가해자 특정에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이 판명되고 조기 사건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실 황 견 분

실황견분이란 경찰관이

- 교통사고 현장
-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나 사고차량

등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교통사고 상황이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 여러분에게는 실황견분 입회를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발생한 당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등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품으로써 제출을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송치

경찰은 수사에 의거해서 가해자를 범인이라고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 가해자를 「피

의자」라고 부릅니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와 같이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사건 송치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신분을 구속했 을때부터 48시간이내에 관계서류와 증거품과 같이 검찰관에게 송치합 니다.

○ 검찰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송치됐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관에 게 피의자의 구류를 청구합니다.

○ 계속해서 피의자의 신분을 구속 할 필 요가 있을 경우는 최장20일 간 피의자를 구류할 경우도 있습 니다.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았던 경우

○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아 임 의로 수사한 경우는 조사 등 의 수사를 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품을 검찰관에 게 송치합니 다.



기 소

검찰관은 송치된 증거 등에 의거해서 피의자에 관한 재판을 할까 말까의 결정을 합니다.

- 재판을 할 경우를 「기소」
-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를 「불기소」

라고 합니다.

또, 기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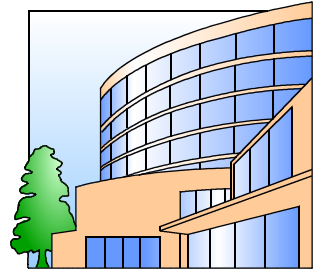
- 공개재판을 청구하는 「공판청구」
- 서면심사로 벌금이나 과료를 명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약식청구」

등이 있습니다. (기소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 기소, 불기소의 판단에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는 검찰관이 피해자나 그 가족 여러분에게 사정을 물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 불기소가 된 경우는 지방법원과 주된 지방법원지부에 있는 검찰심사회에 심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장 가까운 검찰심사회 사무국까지 문의해 주십시오.



공 판 등

공판에서는 법관이 증거에 의거한 심리를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 여러분 (이 팜플렛에서는 이하 「피해자등」이라고 기재합니다.) 에게는 형사재판에서 증인 등으로써 증언 등을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적합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나 방청인한테서 보이지 않도록 사이에 차 단물을 설치하는 것
- 별실에서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

기타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제 1 회 공판기일 후,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는 형사사건의 사건기록을 연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에 관한 심정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등의 신고가 있으면 공판을 우선적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배려됩니다.
- 피고인과 합의한 경우,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합의내용을 형사재판 조서에 기재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검찰청에서 모두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참가제도
위험운전 치사상죄, 과실운전치사상죄 등의 피해자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 피해자참가인이라는 소송수속상의 지위를 얻은 후에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일정한 요건으로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질문하거나

나 사실 또는, 법률 적용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피해자참가인이 된 피해자 등은 공판기일의 출석이나 피고인질문 등의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지만 그 자력(현금, 예금 등의 합계액)에서 요양비 등의 액(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출해야 하는 치료비 기타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이 기준액(200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 예는 법원에 대해 변호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피해자 참가변호사)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은 나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명령제도

위험운전 치사상 등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상시킨 죄 등의피해자 등은 형사사건이 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일 경우, 그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하도록 요청할수가 있습니다.

이 수속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 선고가 있었을 경우, 바로 손해 배상명령사건 심리가 개시돼 원칙적으로 4번 이내의 심리로 간이 신속하게 하고, 형사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형사기록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 피해자에 의한 피해사실 입증이 용이합니다.

또, 4번 이내 기일로 끝나지 않는 경우나 손해배상명령 신고에 대한서의 재판에 대해 이의의 신고가 있었을 경우 등은 통상적인 민사소송수속으로 이행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경찰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 소년에 의한 사건 피해자 등은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피해자 등은 심사개시가 결정된 후,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는 소년사건의 사건 기록(소년의 요보호성에 관해서 하는 조사의 기록인 이른바 사회기록은 제외한다)을 연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관이나 가정법원조사관에 대해 피해에 관한 심정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살인, 상해 등의 고의로 한 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킨 죄, 과실운전치사상 등 (어느 쪽 다 상해인 사안은 그 행위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의 피해자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년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서 심판기일의 심판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서 소년심판 결과 등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갱생보호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된 제도

가해자의 갱생보호에 대해서 피해자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된 경우, 신고를 한 피해자 등은 가해자의 가석방이나 소년원에서의 가퇴원을 허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방갱생 보호위원회가 하는 심리에서 가석방·가퇴원에 관한 의견이나 피해에 관한 심정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취한 의견 등은 지방갱생 보호위원회에서 가석방·가퇴원 판단에 있어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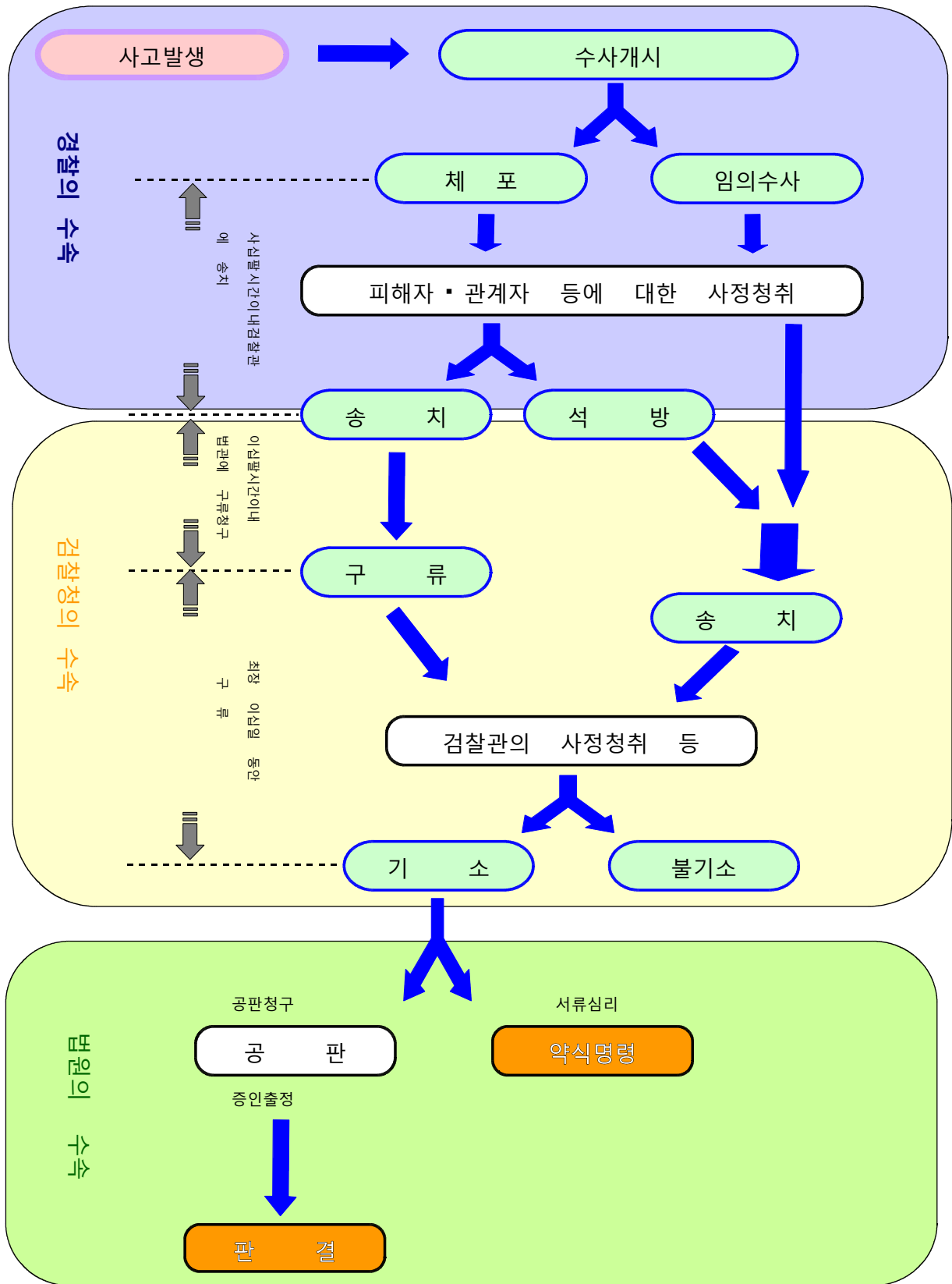
러되는 외에 가퇴원·가석방을 허가할 경우의 특별준수사상의 설정 등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 심정등의 전달제도

가해자가 보호관찰로 된 경우, 피해자 등의 요청에 응해 보호관찰소가 피해에 관한 심정, 피해를 입은 분의 상황, 보호관찰중의 가해자의 생활이나 행동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 이것을 보호관찰중인 가해자에게 전합니다. 보호관찰중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실황 등을직시시켜 반성이나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수속의 플로 차트



※ 범인이 소년 (20세 미만) 인 경우, 소년심판수속 등에 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배책보험과 임의보험

자동차보험에는 강제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자배책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를 포함함) 과 임의보험 (공제를 포함함) 이 있고

○ 자배책보험은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자동차 1 대씩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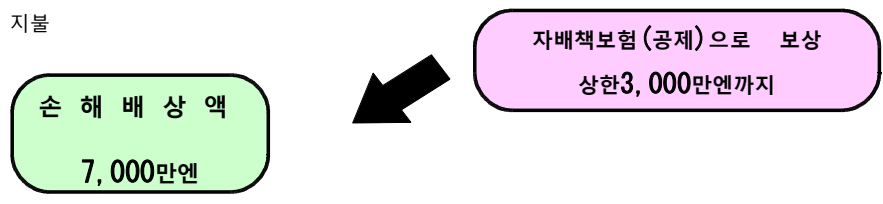
○ 임의보험은 자배책보험으로 보충할 수 없는 손해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배 책 보 험		임 의 보 험						
가입해야 한다 (의무)	가 입	임 의						
인신손해만	대 상	인신손해와 물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사 망</td> <td>3, 0 0 0 만엔</td> </tr> <tr> <td>상 해</td> <td>1 2 0 만엔</td> </tr> <tr> <td>후유장애</td> <td>75만~4, 000만엔 (1~14의 장애등급에 의함)</td> </tr> </table>	사 망	3, 0 0 0 만엔	상 해	1 2 0 만엔	후유장애	75만~4, 000만엔 (1~14의 장애등급에 의함)	지 불 한도액	보험계약 한도액까지의 보상
사 망	3, 0 0 0 만엔							
상 해	1 2 0 만엔							
후유장애	75만~4, 000만엔 (1~14의 장애등급에 의함)							

인신손해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배책보험에서 보상돼 손해배상액이 한도액을 웃돈 경우, 웃돈 금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망사고로 손해배상액이 7,000만엔이 된 경우, 자배책보험으로 상한3,000만엔이 보상(전보)돼 부족한 4,000만엔이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임의보험이나 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인신손해보험 등으로 전액 또는 일부가 보상됩니다. 이것들로도 보상액이 손해배상액에 대해 부족한 경우나 관계자가 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는 가해자 자신이 배상하게 됩니다.



지불

부족한 4,000만엔은?

- 임의보험가입 계약범위내로 보상
- 임의보험미가입 가해자의 부담

■ 자배책보험 (공제)

1 자배책보험의 청구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손해보험회사 (조합을 포함) 에 대해 교통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해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합니다.

(1) 피해자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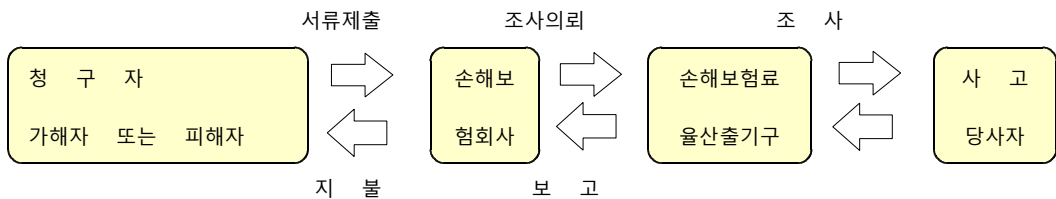
피해자 등이 직접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청구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운전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총손해액의 확정전이라도 피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을 지불했을 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했을 때마다 한도액 범위내로 몇번이라도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의 흐름



2 일시적으로 지불하는 제도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보기 전에 당좌의 출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시금을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청구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해	치료가 끝난 날	사고 발생부터 2년 이내
후유장해	증상고정일	증상고정일부터 2년 이내
사망	사망일	사망일부터 2년 이내

※ 증상고정일이란 증상이 안정돼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를 해도 그 의 효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을 때를 의미하고,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자배책보험 (공제) 청구 제출서류일람표

필요서류	가해자 청구			피해자 청구				
	사망	후유 장해	상해	사망	후유 장해	상해	일시금	
	사망	후유 장해	상해	사망	후유 장해	상해	사망	상해
보험금 (공제) · 손해배상액 · 지불청구서	◎	◎	◎	◎	◎	◎	◎	◎
교통사고증명서 (인신사고)	◎	◎	◎	◎	◎	◎	◎	◎
사고발생상황보고서	◎	◎	◎	◎	◎	◎	◎	◎
의사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	◎	◎	◎	◎	◎	◎	◎
진료보수명세서	◎	○	◎	◎	○	◎		
통원교통비명세서	◎		◎	◎		◎		
간호자인서 또는 간호료영수증	○		○	○		○		
휴업손해증명서 또는 확정신고서 (복사) 등	○	○	○	○	○	○		
가해자의지불을증명하는영수증	◎	◎	◎					
합의서 (합의를본경우)	○	○	○					
청구자의인감증명	◎	◎	◎	◎	◎	◎	◎	◎
위임장 및 위임자의인감증명 (제삼자에게 위임할 경우)	○	○	○	○	○	○	○	○
호적 등본	◎			◎			◎	
후유정애진단서		◎			◎			
엑스레이사진 등	○	○	○	○	○	○		

◎표시는 반드시 제출, ○표시는 사고 내용에 따라 제출할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도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 임의보험 (공제)

※ 보험금청구의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다음과 같은 인신사고에 대해서는 자배책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뺑소니 당하고, 상대방이 판명하지 않는다.
-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이 자배책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사업이란 이런 경우 등에 정부가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에 의거해서 피해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손해를 메우는 제 도입입니다.

청구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등의 자세한 것은 손해보험회사 등에 문 의해 주십시오.

기타 배상청구

자동차에 의한 인신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제 3 조에 규정 이 있고 피해자 등은 가해자 본인 외에 자동차 소유 자에 대해 재산권손해, 정신적손 해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원 조 등의 구 제 제 도 는 있 습 니 까 ?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원조 · 구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 니다.





경제적지원이나 각종지원 · 복지제도

(1) 관공청이 하는 것

명 칭	내 용
복 지 제 도	창구 : 주소지의 자치체, 복지사무소

※ 자세한 것은 관계기관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2) 각종원조 · 구제기관이 하는 일

명 칭	내 용
<p>독립행정법인 자동차사고대책기구</p> <p>○삿포로주관지소 TEL 011-218-8155</p> <p>○하코다테지소 TEL 0138-88-1007</p> <p>○구시로지소 TEL 0154-32-7021</p> <p>○아사히카와지소 TEL 0166-40-0111</p> <p>○피해자 핫라인 TEL 0570-00-0738</p>	<p>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의 교통유아나 중도후유장애자 자식이나 동생에게 생활자금의 대부 등, 아래와 같은 피해자원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p> <p>① 교통사고로 항상 또는 수시의 간호가 필요한 중도후유장애가 남은 분에 대한 간호료 급부</p> <p>② 자동차사고로 중도후유장애가 남은 분이 병원이나복지시설에 단기적으로 입원 · 입소하는 비용의 조성</p> <p>③ 자동차사고로 인한 천연성 의식장애자의 치료 및양호를 하는 양호시설의 설치 · 운영</p> <p>④ 교통유아 또는 중도후유장애자 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대부</p> <p>⑤ 간호에 관한 상담, 교통유아 생활상담 등의 접수</p> <p>홈페이지 http://www.nasva.go.jp</p>
<p>(공재) 교통유아 육성기금</p> <p>TEL 0120-16-3611 03-5212-4511</p>	<p>교통사고로 아버지(어머니)를 여인 16세미만의 교통유아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금 등 중에서 각출금을 지불해서 「교통유아 육성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이것에 국가와 민간협력단체가 부담하는 원조금을 더해 운영, 교통유아가 19세가 될 때까지 육성급부금으로써 1년에 4번(3, 6, 9, 12월)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가입상담 등은 기금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p> <p>의무교육중의 교통유아가 있는 가정 가운데 특히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월년자금」「입학지도금」「진학등 지원금」「긴급시 위문금」을 급부하고 있습니다.</p> <p>교통유아란</p> <p>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인 아동</p> <p>교통사고로 인해 중도 후유장애 (자동차 배상 책임 1~3급)가 남은 자의 자제인 아동</p> <p>홈페이지 http://www.kotsuiji.or.jp</p>
<p>(공재) 교통유아 육영회</p> <p>TEL 0120-52-1286</p>	<p>교통유아나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의 장애가 남은 자녀에 대한 장학금(무이자)의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대상은 고등학생, 전문학생, 단기대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입니다.</p>
<p>(공재) 도로후생회 TEL 03-6674-1761</p>	<p>히가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나카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니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 아동이며 경제적으로 수확이 곤란한 고등학생에 대해 수확자금원조를 하고 있습니다.</p> <p>홈페이지 http://www.douro-kouseikai.org/</p>
<p>일본사법지원센터</p>	<p>피해자 등의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나 범죄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관한 정보의 무료제공이나 자력이 모자란 분을 위해서</p>

<p>(애칭 법테라스) TEL 0570-079714</p>	<p>무료법률상담이나 재판대리비용, 서류작성비용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또, 일본변호사연합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정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인권구제 관점에서 변호사 비용 등의 원조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houterasu.or.jp</p>
<p>(공사) 훗카이도 교통유아회 TEL 011-232-8688</p>	<p>생계를 주로 세우고 있었던 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도의 후유장애자 (자배책1~3급) 자녀와 그 가족에게 「육영장학사업」, 「교환교류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p>
<p>(공사) 훗카이도 교통안전추진위원회 TEL 011-221-6666</p>	<p>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중도의 장애가 남은 자녀이며,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합니다. (70%반환하면 나머지 30%는 면제) 홈페이지 http://www.slowly.or.jp Mail safety@slowly.or.jp</p>

※ 자세한 것은 관계기관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5 경찰 이외의 상담창구는 있습니까?

경찰이외의 관공청이나 공적기관, 기타 각종 기관에서도 다음과 같은 상담창구 개설이나 카운슬링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상담창구

그 관계기관을 소개하므로 참고로 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에 대해서

홋카이도 교통사고상담소	(011) 204-5220 050-3533-4703	삿포로시중앙구북3조서6 도청1층 IP전화 (원거리상담자용)
삿포로시 교통사고상담소	(011) 211-2075	삿포로시중앙구북1조서2삿포로시본청사1F
(재)홋카이도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추진센터내교통사고상담소 (011) 737-8703	삿포로시북구북30조서6정목4번18호

○ 손해배상에 대해서

(재) 교통사고 분쟁처리센터 삿포로지부	(011) 281-3241	삿포로시 중앙구 북 1 조서 10 삿포로 변호사회관 4F
(재) 일 변 연 교통 사고 상담 센터	삿포로지부	(011) 251-7730 삿포로시 중앙구 북 1 조서 10 삿포로 변호사회관 2F
	하코다테지부	(0138) 41-0232 하코다테시카미신카와조1-3하코다테변호사회내
	아사히카와지부	(0166) 51-9527 아사히카와시하나사키조4아사히카와변호사회내
	구시로지부	(0154) 41-3444 구시로시가시와기조4-3 구시로변호사회내
(사) 일본손해보험협회 손포ADR센터	0570-022808	도쿄도치요다구간다아와지초2-105 와테라스 아넥스7F
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 (자배책보험에 관한 청구상담)	03-6758-1300	도쿄도신주쿠구니시신주쿠3동-7-1 신주쿠파크타워빌딩
전국 공제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JA공제연) 자동차부 교통사고상담소	(011) 232-6348	삿포로시중앙구북4조서1J A 호쿠노우빌딩

○ 검찰청에 대해서

검찰청 피해자 핫 라인	<p>피해상담이나 사건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삿포로 지방검찰청 전화 : 011-261-9370 ◇ 하코다테 지방검찰청 전화 : 0138-41-1655 ◇ 아사히카와 지방검찰청 전화 : 0166-51-6259 ◇ 구시로 지방검찰청 전화 : 0154-41-6133 <p>전국 지방검찰청 창구 (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kensatsu.go.jp/higaisha/index.htm#hotline</p>
-----------------	--

○ **민간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해서**

피해자 중에는 큰 충격을 받아 불안에 떨며, 정신적 불안으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화나 면접으로 카운슬링 등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

사단법인 홋카이도 가정생활 종합카운슬링센터

(홋카이도 피해자상담실 · 홋카이도 종합상담창구)

삿포로시중앙구북2조서7 가데루2·7

TEL 011-232-8740 월~금 (휴일 제외) 10:00~16:00

◆ **도마코마이 피해자상담실**

TEL 0144-37-7830 매주수 · 금요일 (휴일 제외) 10:00~16:00

◆ **하코다테 피해자상담실**

TEL 0138-43-8740 매주수요일 (휴일 제외) 10:00~15:00

◆ **북 · 홋카이도 피해자상담실**

TEL 0166-24-1900 매주화 · 목요일 (휴일 제외) 10:00~14:00

◆ **구시로 피해자상담실**

TEL 0154-24-6002 매주화 · 금요일 (휴일 제외) 10:30~14:30

◆ **오호츠크 피해자상담실**

TEL 0157-25-1137 월~금 (휴일 제외) 9:15~16:15



메 모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box.



홋카이도 경찰

<http://www.police.pref.hokkaido.jp>